

巨濟郡設置에 관한法律 폐지 법률안
(김종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14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0. 31.

발의자 : 김종희 · 이용주 · 최경환(평)
황주홍 · 유성엽 · 이찬열
조배숙 · 장병완 · 김수민
정동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이 법은 거제군을 설치하기 위하여 1952년에 제정되었으나, 「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」에 따라 종전의 거제군이 폐지되고, 폐지된 거제군 일원이 신설된 거제시에 편입됨으로써 동 법률은 이미 실효(失效)된 상태임.

이에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.

법률 제 호

巨濟郡設置에 關한法律 폐지 법률안

巨濟郡設置에 關한法律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